

<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

낙찰자 결정방법	내 용	적용대상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58.3억원 이상 공사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58.3억원 미만 공사

공정위, 은행업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토)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에 있어서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정리한 「은행업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은행연합회의 회원 은행에 통지하였다.

동 유의사항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실시되어 온 금융자율화로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16개 은행의 환전수수료 담합¹⁾ 등 많은 은행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은행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된 것이다. 동 유의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본 유의사항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예정이다.

동 유의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례」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기준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리·예금금리·수수료 등을

인상·인하 또는 유지하기로 결정하거나 금리 등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통일을 도모하는 행위, 타은행과 의논하여 영업시간의 통일, 영업점포의 설치 제한, 상품종류의 제한 등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및 타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액의 제한·고객의 제한·영업분야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신디케이트론 등 개별 은행만으로는 여신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여신제공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크게 여신과 관계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수신과 관계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였다. 즉, 여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의 체결 등 여신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경영 관여나 쥐기, 중복·과다 채무보증 징구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대출받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었으며, 수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허위·과장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과다하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동 유의사항의 시행 이후 적발되는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은행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1) 1998. 3.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50호, 사건번호 9802공동0103
 동 심결에 관해서는 공정경쟁 제32호('98년 4월호) p.48 참조